

국방부령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방부 (인사기획관리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현역병으로 편입할 경우 종전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계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, 임용시 장기 복무부사관으로 선발하는 전형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,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 장애인이 된 부사관이 준사관을 지원할 경우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임용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하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은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31조제1항제6호 중 “경력(군에서의 학력 및 경력은 제외한다)”을 “경력”으로 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 현역병 편입자의 계급 부여) ① 병

역법 제5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여 복무하고 있는 자 또는 승선 근무예비역이 현역병으로 편입된 경우(이하 “현역병 편입자”라 한다.)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.

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.

제36조의 제목 “(병의 진급 선발 대상자)”를 “(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발을 제한한다.

1.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(약식명령 제외)
2. 행방불명이 된 경우
3. 군무이탈 중인 경우

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.

1.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
2.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시킬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복무 중인 현역병 편입자의 적용 특례) 제34조의2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현역병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인 병의 차상위 및 그 다음 계급 진급 선발시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) ① (생략) ② 「 <u>군인사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6항에 따라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<u>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지원서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	제2조(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제13조(준사관의 임용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 ③ <u>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사관의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</u>	제13조(준사관의 임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.</u> ④ <u>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</u> ----- ----- -----.
제14조(부사관의 임용) ① ~ ④ (생략)	제14조(부사관의 임용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31조(부서관진급 대상자의 선발 기준) ① 부서관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서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학력 및 경력(군에서의 학력 및 경력은 제외한다)

7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<신 설>

⑤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임용시 장기복무 부서관으로 선발하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은 장기복무 부서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31조(부서관진급 대상자의 선발 기준) ① -----

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경력

7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4조의2(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 현역병 편입자의 계급 부여)

①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여 복무하고 있는 자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현역

제36조(병의 진급 선발 대상자)
병의 진급 선발 대상자의 자격
제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
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<신 설>

병으로 편입된 경우(이하 “현역
병 편입자”라 한다.) 현역병 의
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
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
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
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
한 계급을 부여한다.

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
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
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
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
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
기간에 산입한다.

제36조(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
유)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
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
발을 제한한다.

1.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
(약식명령 제외)

2. 행방불명이 된 경우

3. 군무이탈 중인 경우

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
은 해당 계급에서 진급 최저복
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
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
할 수 있다.

<신 설>

1.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

2.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등처
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1
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
급시킬 수 있다.